

노인학대신고 | 1577-1389

노인학대!

바로알기

시설종사자
교육교재



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대사
이연경, 최재원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24시간 상담)



노인복지법 근거조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부터 12(비밀누설의 금지)

CONTENTS

알쏭달쏭 학대행위	• 3
노인과 인권	• 4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 5
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	• 15
시설 및 종사자 조치사항	• 16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 18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소개	• 19

알쏭달쏭 학대행위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 친하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다.
- 어르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다.
- 업무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급하게 시설비가 필요해서 어르신이 맡겨놓은 금품을 사용했다.
나중에 돌려드리면 되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았다.
- 입소한 어르신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설청소를 해야 한다.
-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방에 못 쓰는 물품, 취급주의 물품을 쌓아
놓았다.

위의 예시는 모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노인학대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노인과 인권

Q 인권이란?

A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

Q 노인인권이란?

A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Q 시설종사자의 인권이란?

A ()

Q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이란?

A ()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괄호 안에 들어갈 답이 다른 내용일까요?

시설종사자와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모두 보장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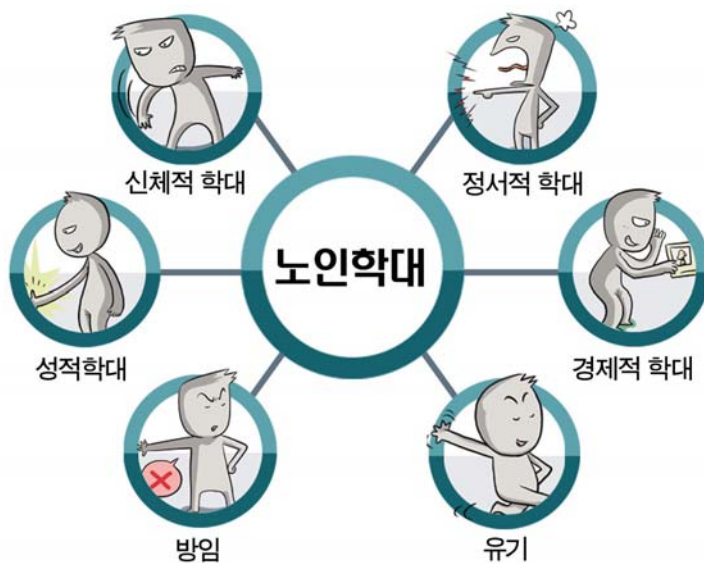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요양보호사 김씨는 최근 치매로 시설에 입소한 오씨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오씨 할아버지는 김씨가 스쳐 지나가 기만 하면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해”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른다. 어느 날은 지팡이로 김씨를 갑자기 내려치려 하자, 요양보호사 김씨는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를 뺏고 할아버지 두 손을 끈으로 묶어 침대에 강제로 옮긴 뒤, 30분간 방 침대에서 내려오면 지팡이로 맞는다며 침대 귀퉁이를 지팡이로 때리며 엄포를 주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타박, 골절 등의 피해가 생긴 적이 있다.
-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
-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 적이 있다.
- ☐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 적이 있다.
- ☐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끈이나 억제대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사용한 적이 있다.
- ☐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 적이 있다.
-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 적이 있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요양보호사 이씨는 시설에서 일한지 3년째로 이젠 제법 일이 능숙하다. 그러나 시간 내 일을 끝내려다 보니, 난폭하게 기저귀를 갈거나 생활노인들의 자질구레한 요구를 못들은 척하는 행동이 늘기 시작했다. 이를 본 생활노인 중 조씨 할머니가 불평을 털어놓자 화를 내며 “힘들어 죽겠는데 별 시비를 다 걸고 있네! 정말 버릇이 없는 할망구일세.”라며 얼굴을 획 돌리고 방을 나갔다. 이후에 요양보호사 이씨는 더욱 조씨 할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등 마치 없는 사람 처럼 대한 적이 있다.
- ☐ 어르신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있다.
- ☐ 어르신에게 ‘집으로 보내겠다’, ‘밥 안주겠다’, ‘죽게 내버려두겠다’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한 적이 있다.
- ☐ 입소 및 퇴소, 물품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한 적이 있다.
- ☐ 어린이가 다루 듯하며, 반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
- ☐ 종교활동을 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참여시킨 적이 있다.
- ☐ 어르신의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입소한지 얼마 안 된 박씨 할머니 기저귀를 이성 요양보호사가 교체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할머니에게 “아직도 여자인 줄 아나봐. 이젠 다 보여줘도 괜찮거든요.”라고 비웃으며 강제로 기저귀를 갈았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 적이 있다.
-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은 적이 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모 양로시설에서는 보호자인 아들이 시설이용비를 3개월째 지불하지 않자, 노인이 끼고 있는 금으로 된 반지를 강제로 빼앗고 할아버지에게 직접 아들에게 전화해서 시설이용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호자 없이 퇴소시키겠다고 전하라고 강요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한 적이 있다.
- ☐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노령연금 등)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다.
- ☐ 어르신 돈이나 재산을 어르신 마음대로 관리 또는 사용 못하게 한 적이 있다.
- ☐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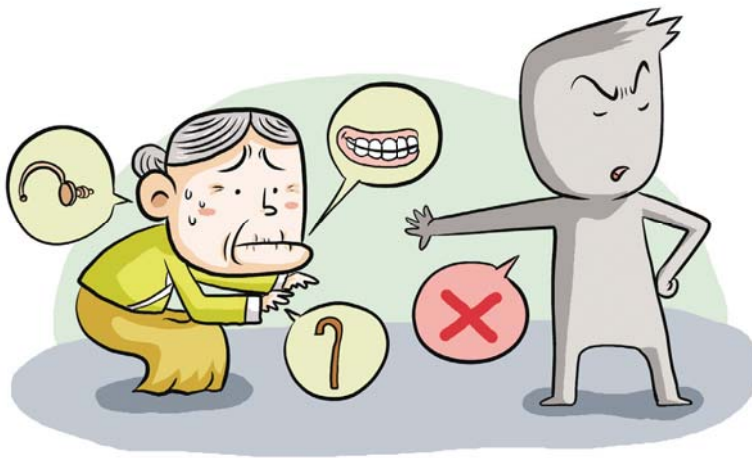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시설에 어머니를 맡긴 정씨는 명절에 잠시 집으로 어머니를 모
시고 왔다. 모처럼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짓무르기까지 한 것을 발견했다. 병원에 곧바로 가니 의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놔두었냐는 말을
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임 행위를 체크☑ 해봅시다.

- ☐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 화재, 안전사고, 위생문제 등 위험한 환경 등에 노출시킨 적이 있다.
- ☐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여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난 적이 있다.
- ☐ 어르신의 의복, 침구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다.
- ☐ 어르신의 의복을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게 제공한 적이 있다.
- ☐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 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 어르신에게 필요한 보장구(휠체어, 보행보조차, 위생용품, 이동식좌변기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 돌봄의 부족과 소홀로 악취, 욕창, 염증 등이 나타나거나 심해진 적이 있다.
- ☐ 생활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다.
- ☐ 어르신이 치료, 약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몸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목격한 적이 있다(자기방임).
- ☐ 어르신이 자살을 계획 또는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자기방임).



유 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입소비용이 몇 달째 미납되어 연락하면 가족들이 내일 입금하겠다고 한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가족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입소비용 미납으로 노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라고 보낸 후 노인을 집 앞에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 행위를 체크☑ 해봅시다.

-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적이 있다.
- ☐ 어르신을 시설 입소 후 알 수 없는 낯선 곳으로 장시간 옮긴 적이 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 (시설운영 유의점)**

노인 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동료노인, 외부인 뿐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의 역할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 최적의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2010).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 인용함

시설 및 종사자 조치사항***

시설생활노인 학대사례 개입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비치
-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1577-1389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며 의사에 반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음.

신고이후 시설의 조치내용

- 시설은 신고인의 신분 보장, 학대사례 응급조치 및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조사와 사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
- 시설장, 사무국장은 노인의 안전 확인, 학대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2010).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 인용함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개입 진행
-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제공
- 시설장은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실시
-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우선하고 징계가 요구될 경우 자문과 규정에 의거, 결정

평 가



- 노인의 안전한 보호 조치 평가
- 노인의 신체, 심리적 기능 회복 정도 평가
- 학대재발 가능성 평가
- 결과는 분기별로 시군구 보고

사후조치

-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재발여부 확인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요령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신고방법

- **1577-1389**로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신고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신고자의 비밀보장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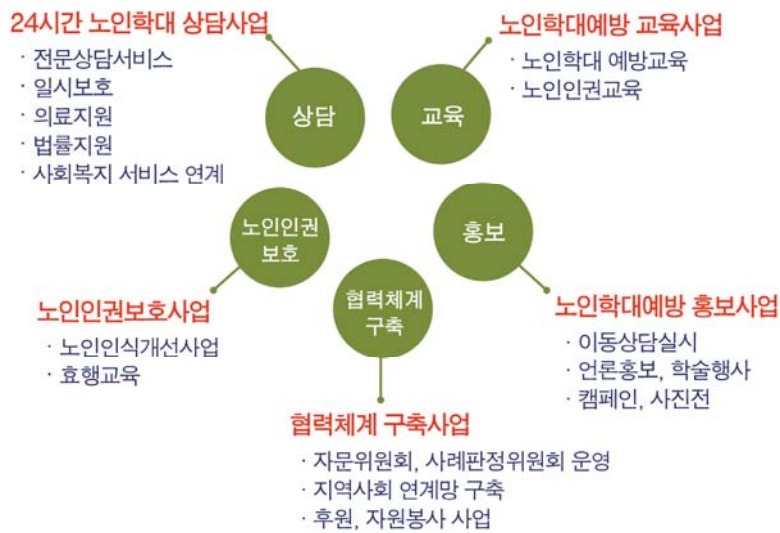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3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실시
- 사업내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목 적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강화
- 입소대상 : 만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 입소기간 : 입소일로부터 3개월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협력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으로 가능합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25개소)

전국 공통번호 **1577-1389**(24시간 상담)

구 분	주 소	연 락 처	홈 페이지
중 앙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55 성촌빌딩 2층	02)3667-1389	www.noinboho.or.kr
서 울 남 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3274-3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 울 북 부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70-2번지	02)921-1389	www.sn1389.or.kr
부 산 동 부	부산 동구 초량3동 1164-5번지 2층	051)468-8850	www.bs1389.or.kr
부 산 서 부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051)867-9119	1389.bulgukto.or.kr
대 구	대구 남구 이천동 418-1 2층	053)472-1389	www.dg1389.or.kr
인 천	인천 남동구 간석3동 26-3 인천시사회복지회관 204호	032)426-8792~3	www.ic1389.or.kr
광 주	광주 남구 사동 57-1	062)655-4155~7	www.gjw.or.kr/kj1389
대 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5-14 더포엠 II 102호	042)472-1389~90	www.dj1389.org
울 산	울산 남구 아음동 577-6	052)265-1389	www.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
경 기 남 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10번지 성남실내체육관 3층	031)736-1389	www.kg1389.or.kr
경 기 북 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26-10	031)821-1461~2	www.gnnoin.kr
경 기 서 부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92-8번지 2층	032)683-1389	www.ggw1389.or.kr
강 원	강원 춘천시 후평1동 710-4	033)253-1389	www.1389.or.kr
강 원 동 부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62번지	033)655-1389~90	www.gd1389.or.kr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충북재활의원 3층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 북 북 부	충북 충주시 지현동 1498번지	043)846-1380~2	ww.cbb1389.or.kr
충 남	충남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www.cn1389.or.kr
전 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6-8	063)273-1389	www.jb1389.or.kr
전 남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www.jn1389.or.kr
전 남 서 부	전남 목포시 상동 970-8	061)281-2391	www.j1389.or.kr
경 북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69-4 기쁨의교회복지관 208호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북서북부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5 3층(본사무소) 경북 김천시 평화동 12길 10 2층(분사무소)	054)655-1389~90 054)436-1390	www.gbnw1389.or.kr
경 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4-3 금강노인복지관 2층	055)222-1389	www.gn1389.or.kr
제 주	제주 제주시 삼도2동 44-1	064)757-3400	www.jejunoin.org